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-9호

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(부분)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

송파구 고시 2017-105호(2017.08.03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00호(2021.12.16.)로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신천동 17-6번지 일원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부분(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) 준공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월 8일

송 파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재건축정비사업

나. 명 칭 :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
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-6번지 일원

나. 명 칭 :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(조합장 유동선)
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7, 9층(방이동, 제이타워)

4. 준공인가의 내역

가. 구역면적(대지면적) : 75,684.5㎡(67,936.1㎡)

나. 부분준공 대상 : 공동주택(아파트) 13개동 1,865세대(임대 198세대 포함) 및 부대복리시설(근린생활시설 포함), 정비기반시설(도로, 공원 등)

다. 준공인가 제외부분 : 사업시행인가 조건 중 지하보도 연결통로(송파구 고시 제2025-87호(2025.10.10.)) 공사 미완료 부분

라. 준공인가일 : 2025. 12. 30.